

■ 세로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세로골목 학습자들에게 안내드립니다.

1.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5명 이상 모인 학습공동체에 강사가 지원됩니다.
2. 수강료는 무료이나, 준비물 및 강의교재 등은 학습자 부담 원칙입니다.
3. 세로골목 학습은 2015년 5월~8월 운영되며, 최대 강의 횟수는 12회입니다.
4. 동일한 학습공동체는 1강좌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한 강좌에 학습공동체의 사정으로 2회 이상 휴강하게 되면 다음 번 세로골목 학습 신청이 제한됩니다. 강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6. 학습자께서는 교수자에 대한 예의로 골목지기 강사님을 대해 주시고, 모니터요원 및 블로그 기자단 취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로골목 골목지기 강사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골목지기는 2015년 평생교육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강의 A-Z까지」 수료자이며, 강의 활동 전에 구비서류(이력서/범죄확인서 등) 미제출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활동이 가능합니다.
2. 골목지기의 활동 기간은 2015년 5월~7월까지이며, 강사료는 1회, 2시간 3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한 학기에 강사 1인이 최대 2강좌까지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3. 강좌별 최대 강의 횟수는 12회이며 일부는 재능기부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1인당 지급되는 강사료 최대 30만원입니다.
4. 강사로서 기본적인 매너와 소양을 갖추며, 강의시간 · 강의내용 · 강사의 기본 매너를 준수하여 강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주세요~
5. 학습자는 강사와의 직계가족은 제한되니 이 점 꼭 지켜주세요!
6. 세로골목 학습의 교육계획서는 서대문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www.sdm.go.kr)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7. 강의 후 세로골목 학습 관련 사진을 2장 이상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 주세요!
8. 강좌 진행 시 필요에 의해 실외에서 수업을 할 경우 타지역(서대문구 외)은 총 수업 일수의 1/2를 넘길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계획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9. 모니터링 실시나 블로그 기자단의 취재는 세로골목을 홍보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 강좌에 2회 이상 민원이 발생되거나 2회 이상 강사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강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요가, 라인댄스, 실버놀이 활력 등 신체활동이 주가 되는 강좌의 경우 하루에 강의 시간을 1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2시간 수업을 1회 강의로 인정합니다.
하루에 동일한 학습공동체 대상으로는 2시간이하만 강의가능합니다.
1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무료과정 안내를 학습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사는 강사료에 준한 일정액의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는 서대문구청에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